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. 2. 4.(화) 총 17매(본문 13, 참고 4)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	담 당 자	· 과장 남영우, 사무관 문영훈, 주무관 김재현, 김길수 · ☎ (044) 201 - 3402, 3407	
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	담 당 자	· 과장 하종목, 사무관 한상정 · ☎ (044) 205 - 3949	
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담 당 자	· 과장 손주형, 사무관 황기정 · ☎ (02) 2100 - 2832	
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	담 당 자	· 과장 박문재, 팀장 박희영, 주무관 홍성훈 · ☎ (02) 2133 - 4662, 4663	
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담 당 자	· 국장 이준수, 팀장 김부곤, 선임 김명수 · ☎ (02) 3145 - 8020, 8040	
한국감정원 시장관리처	담 당 자	· 처장 조철희, 부장 정병기, 과장 김준동 · ☎ (053) 663-8610, 8611	
보 도 일 시	2020년 2월 4일(화) 14:00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.		

불법행위 · 이상거래에 대한 엄중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근절해나가겠습니다.

- ◆ 합동조사 2차 결과 발표... 조사대상 중 약 50%(670건)는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,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94건은 금융위 등 현장점검 실시
- ◆ [2월] 과천 ·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전체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...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,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신설로 고강도 조사 뒷받침
- ◆ [3월] 실거래 집중조사 전국 확대...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검증도 실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, 금융위원회(위원장 은성수), 서울특별시(시장 박원순), 금융감독원(원장 윤석현), 한국감정원(원장 김학규) 등이 참여한 ‘관계기관 합동조사팀’(이하 ‘조사팀’)은 2월 4일(화) 브리핑을 통해 ‘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’ 2차 결과를 발표하였다.

조사 진행 경과

- 지난해 하반기 서울 지역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,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0월 11일(금)부터 “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”(이하 “합동조사”)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11월 28일(목)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.

< 1차 조사결과 주요내용 >

- ◆ '19.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
- ◆ 8~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8,140건 중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건 등 2,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
- ◆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조사가 가능한 1,536건을 1차 조사대상 선정
⇒ 이 중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
- ◆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,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59건 확인, 「부동산거래신고법」 위반 10건 과태료 부과

- 1차 조사에 이어 '19.12월부터 '20.1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이번 2차 조사에서는,

- ① 1차 조사대상 1,536건 중 소명자료·추가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,
 - ② 8~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조사가 가능한 187건,
 - ③ 그리고 10월 신고된 공동주택(아파트 등, 분양권 포함) 거래 16,711건에서 추출된 1,247건(약 7.5%)의 이상거래 사례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 등,
- 총 1,333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,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,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,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.

【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조사대상(1,333건) 세부내용 】

- 지역별 : 강남·서초·송파·강동 508건(38%)
 마포·용산·성동·서대문 158건(12%)
 그 외 17개 구 667건(50%)
 - 거래금액별 : 9억원 이상 475건(36%)
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353건(26%)
 6억원 미만 505건(38%)
 - 유형별 : 자금출처 불분명·편법증여 의심사례* 1,203건
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등 130건
- * 주요 유형 : 차입금 과다, 현금 위주 거래, 미성년자 거래, 친족 간 차입 의심거래 등

2차 조사 결과 요약

□ '20.1월까지 2차 조사대상 1,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,

-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,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,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,
-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의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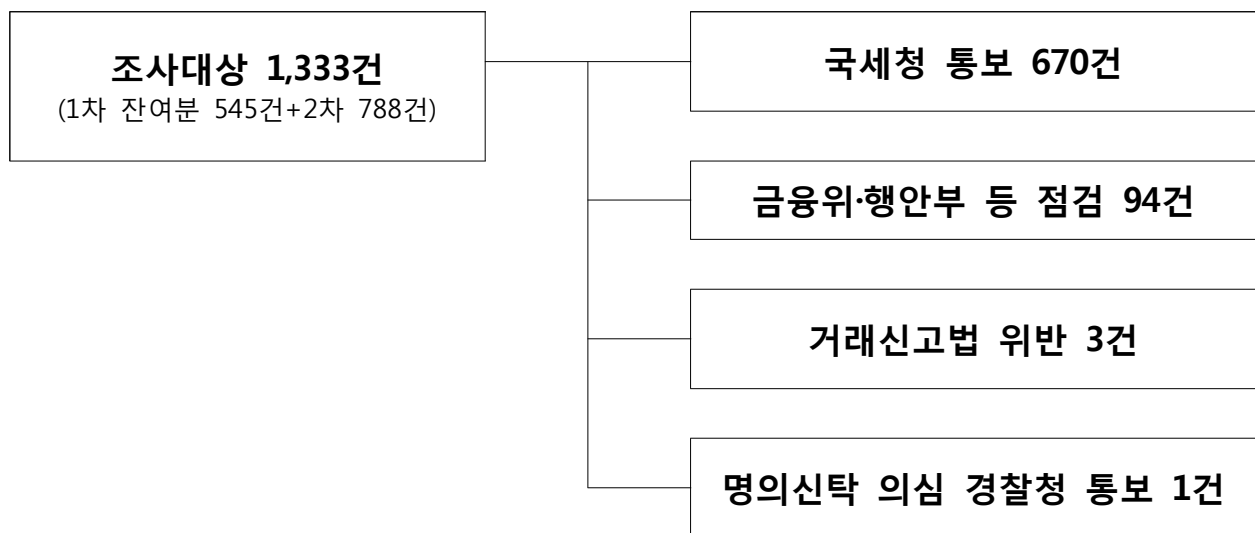
【 거래 금액별 관계기관 통보·점검 건수 】

	국세청 통보	금융위·행안부 점검
9억 원 이상	267건(40%)	62건(66%)
6~9억 원	200건(30%)	13건(14%)
6억 원 미만	203건(30%)	19건(20%)
계	670건	94건

- 또한 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 상 금지행위인 ‘명의신탁약정’^{*}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, 수사의뢰하기로 하였으며,

*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는 약정
(신탁자 : 가액 30% 과징금, 최대 5년 징역·2억 벌금 / 수탁자는 최대 3년 징역·1억 벌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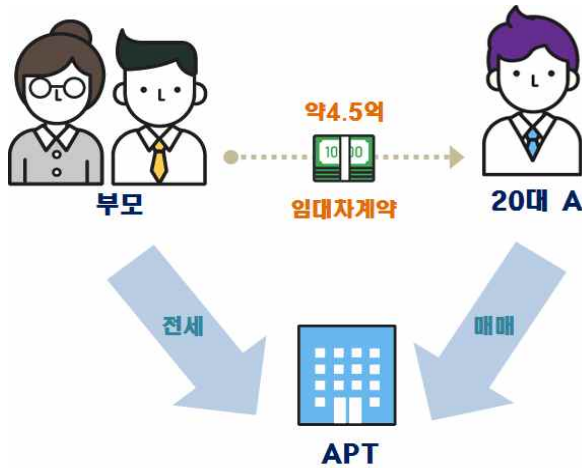
-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「부동산거래신고법」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(약 3천만원)하기로 하였다.



- 이번 2차 조사에서 확인되어 국세청·금융위·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·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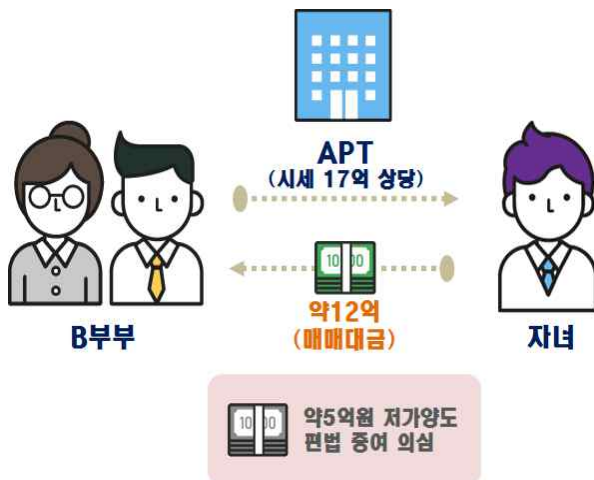
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 (편법 · 불법 증여 관련)

1)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편법 증여 의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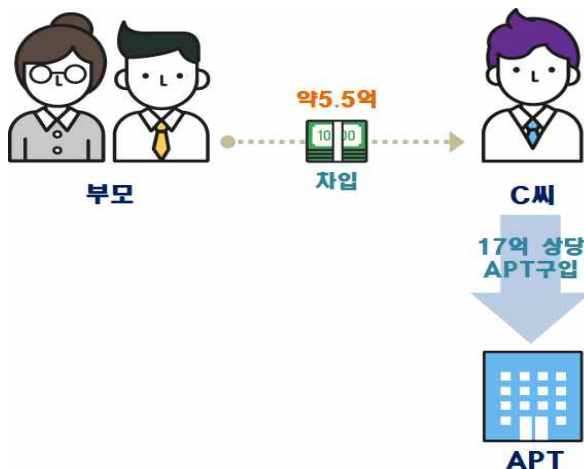
- ① 20대 A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(전세금) 형태로 약 4.5억원을 받아,
 - ② 금융기관 대출금 약 4.5억원과 자기자금 1억원으로 10억원 상당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'19.6월 매수
- ⇒ 임대보증금 형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 통보

2)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



- ① B부부는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 하면서,
 - ②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약 12억원에 '19.10월 거래
- ⇒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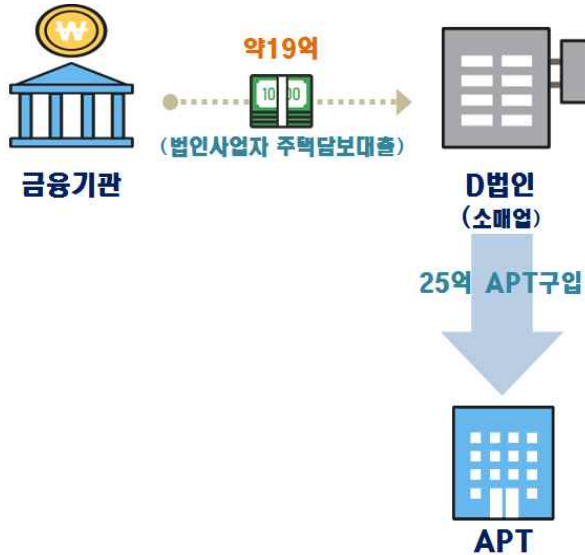
3)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



- ① C씨는 자기자금 거의 없이(약 5천만원) 17억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'19.8월 매수하면서,
 - ② 신용대출 약 1.5억과 전세보증금 약 9.5억을 포함하여
 - ③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약 5.5억원을 '19.8월 차용하였음
- ⇒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

주요 금융위·행안부·금감원 점검 사례 (대출취급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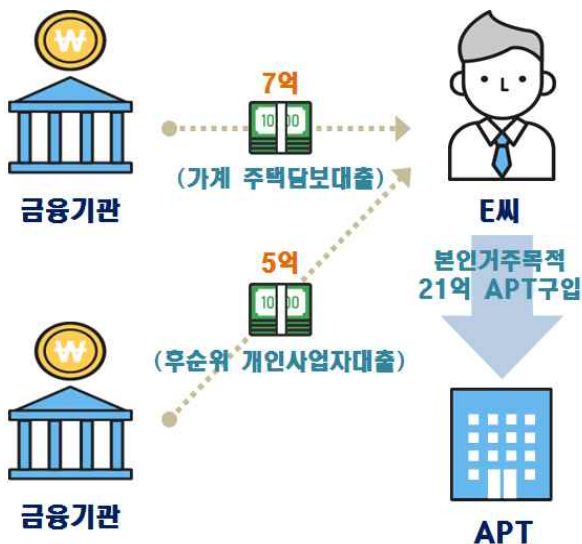
1)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 의심



- ① 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'19.7월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,
- ②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대출(주택담보대출)을 19억원을 받음

⇒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금지 위반 의심

2)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의 유용 등 의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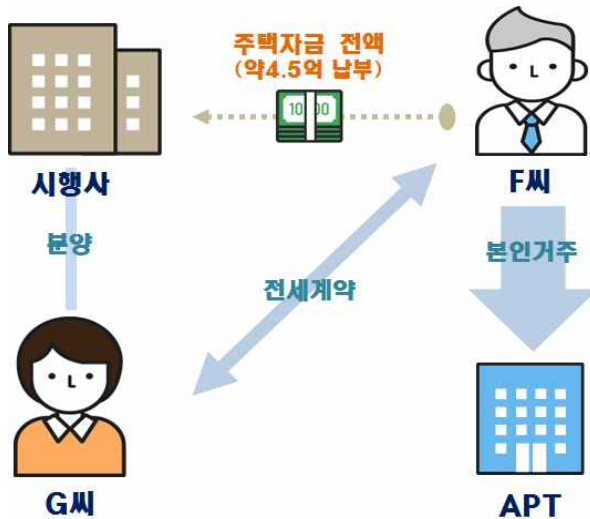


- ①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E씨는 서초구 소재 21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,
- ② A 은행으로부터는 선순위 가게 주택담보대출 7억원
- ③ B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는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5억원을 받았으며,
- ④ 현재 동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

⇒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, 취급과정에서 투기지역내 주택 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, 용도의 유용 등이 의심

경찰청 통보 사례 (명의신탁약정)

1) '명의신탁약정' 의심사례



- F씨는 '19.8월 분양받은 4.5억원 상당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'19.10월 지인인 G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나
 - 주택자금 전액을 F가 납부하면서 '19.10월 G와 임대차 계약(약 2.5억)을 체결하고 F가 거주 중
(※ G 자금 없이 전액 F 자금으로 구입)
- ⇒ 명의신탁 약정 의심사례로 경찰청 통보

관계기관 합동조사 향후 계획

-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,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.
- 참고로 지난 1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하여 자금출처와 변제 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 '19.12.23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.
- 금융위, 행안부,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, 대출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.

불법행위와 이상거래,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.

- 금년 2월 21일(금)부터는 지난 8월 2일 개정된 「부동산거래신고법」이 시행됨에 따라

- ①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되며,

현 행		'20.2.21일 개정 법률 시행
실거래 조사권한 : 시·군·구	➡	실거래 조사권한 : 시·군·구, 국토부 (감정원 위탁 가능)

- ②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,
- ③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며(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),
- ④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*에 대해서는 3,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* 실제 계약 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하는 행위(일명 “자전거래”)

- 아울러, 금년 3월부터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」(이하 “12.16 대책”)에 따라

-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(3억원 이상 주택)을 포함한 전국(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)으로 확대되며,
- ②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,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,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.

※ 위 내용을 담은 「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 중(1.3 ~ 2.12)

- 또한, 12.16 대책에서 국토부·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,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부동산 거래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계획에 따라
 - 2월 2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, 대출 규제 미준수, 업·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담합, 불법전매, 청약통장 거래,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.
-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와 비정상 자금조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.

1.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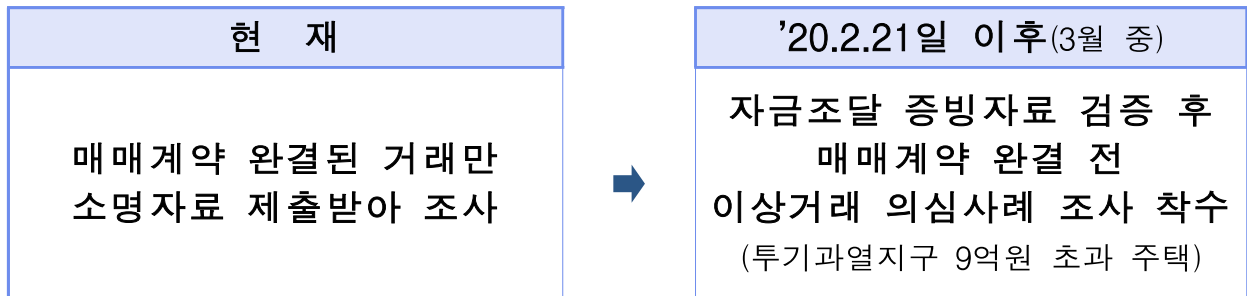
현 재		'20.2.21일 이후
서울 25개 구 자금조달계획 집중조사	➡	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 (투기과열지구(2.21) → 전국(3월 중))

- '19.10월부터 진행 중인 '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'와 같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을 금년 2월 21일부터는 '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'로 확대한다.
- ① 이에 따라 2월 21일부터는 기존 조사대상인 서울 25개 구 외의 투기과열지구*에서도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, 현금 위주 거래,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가 진행되며,
 - * (31개 시·군·구) 서울 25개 구 + 과천, 성남분당, 광명, 하남, 대구수성, 세종
- ② 12.16 대책에서 기 발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* 내용을 포함하는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이

금년 3월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*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강도 집중조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.

- * (현행)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⇒
(개선)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

2.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검증 실시



□ 아울러 3월 시행되는 개정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, 납세증명서, 부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착수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.

- 그간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자료가 부재하여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,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곤란하였고,
- 이에 따라 12.16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.

□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국토부·감정원이 국세청·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고 시점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하여 매수인의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,

-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완결 전(예 : 계약 직후 등) 조사에 착수하여 중도금 지급, 잔금 지급 등 거래全过程에서의 자금조달과 조달자금 지급의 문제 유무를 모두 확인할 계획이다.

3. 불법행위 직접 수사 및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체계 강화

현 재	'20.2.21일 이후
고유업무 수행, 검직 등으로 불법행위 직접 수사 곤란	전담 특사경 배치 담합·불법전매 등 부동산 범죄 직접 수사
국토부·지자체 단위로 분절화된 특사경 체계	부동산 수사 총괄반 설치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과 공조, 합동수사 등 추진

- 현재 국토부에 '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'(이하 "특사경")이 6명* 지명되어 있으나,

* 토지정책과 2명(실거래법), 부동산산업과 2명(중개사법), 주택기금과 2명(주택법)

- 정책업무 담당자들이 특사경 지위를 겸직하는 방식이므로 특정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수사 활동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.
- 집값담합, 불법전매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범죄 수사활동이 필요한 만큼,
- 2월 21일까지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국토부 "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"이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된다.

- “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”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“컨트롤 타워”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
-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부 직접 수사, 기획 수사 등과 함께 17개 시·도, 480여명의 전국 특사경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수사·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.
- 특히 최근 주요 언론 등을 통해 지속 보도되고 있는 ‘집값담합’은 개정 「공인중개사법」 시행(’20.2.21)에 따라 2월 21일부터 형사처벌 대상(위반 시 3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)으로 특사경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,
- 국토부·감정원,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유형별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, 법 시행 즉시 집값담합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 등 수사역량을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.

4. 실거래 조사기간 단축

현 재		’20.2.21일 이후
1개월 단위 신고분을 약 2개월 간 집중조사	➡	전담 조사팀 중심으로 1개월 수준으로 단축

- 현재 국토부·국세청·금융위·서울시 등과 함께 ‘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’를 진행하고 있으나, 합동조사팀은 모두 고유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속한 이상거래 검토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.
- 2월 21일부터는 전국 실거래 조사를 총괄하는 국토부 ‘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

-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‘실거래상설조사팀’(이하 “상설조사팀”)을 한국감정원에 약 40명 규모로 신설한다.
 - 상설조사팀은 본사 및 30여개 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전국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될 계획이며,
 - 소명자료 검토 등 실거래 조사만을 전담 수행하는 팀이 신설됨에 따라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 업무 수행을 통해 이상거래의 조사 기간을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.
-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“이번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.”면서
- “2월 21일부터는 국세청,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,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하여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영훈 사무관(☎ 044-201-340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1.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지?

-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 제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
 -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,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과 함께,
 - 차입금 과다 거래, 현금 위주 거래,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

2.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?

-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,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,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자료,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요구 및 출석조사를 시행
 -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, 관할 구청은 「부동산거래 신고법」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
 - 탈세 의심사례와 대출 규제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·금감원·행안부(편법·불법대출), 국세청(편법증여) 등 해당 기관에서 추가 확인하여 조치

3.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포함한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 향후 계획은?

- 현재 진행 중인 “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”를 2월 이후에도 이어나가는 한편, 2월 21일부터는 국세청·금융위·금감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국토부 “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”과 한국감정원 “실거래상설조사팀”이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

* (2.21)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 ⇒ (3월) 조정대상지역·비규제지역 등 전국

4. 2월 21일 시행되는 신고 기한 단축(60 ⇒ 30일), 해제신고 의무화, 허위계약 신고 금지 규정과 3월 시행 예정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적용 대상은?

- 신고 기한 단축, 해제신고 의무화는 금년 2월 21일 계약 체결분, 허위계약 신고 금지 및 처벌은 같은 날 신고분부터 적용되며
 -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「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3월 중 공포되면, 3월 중 공포일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
- 국토부는 입법예고 중인 「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」 개정안의 공포 시기 전·후로 개정되는 내용을 수시로 홍보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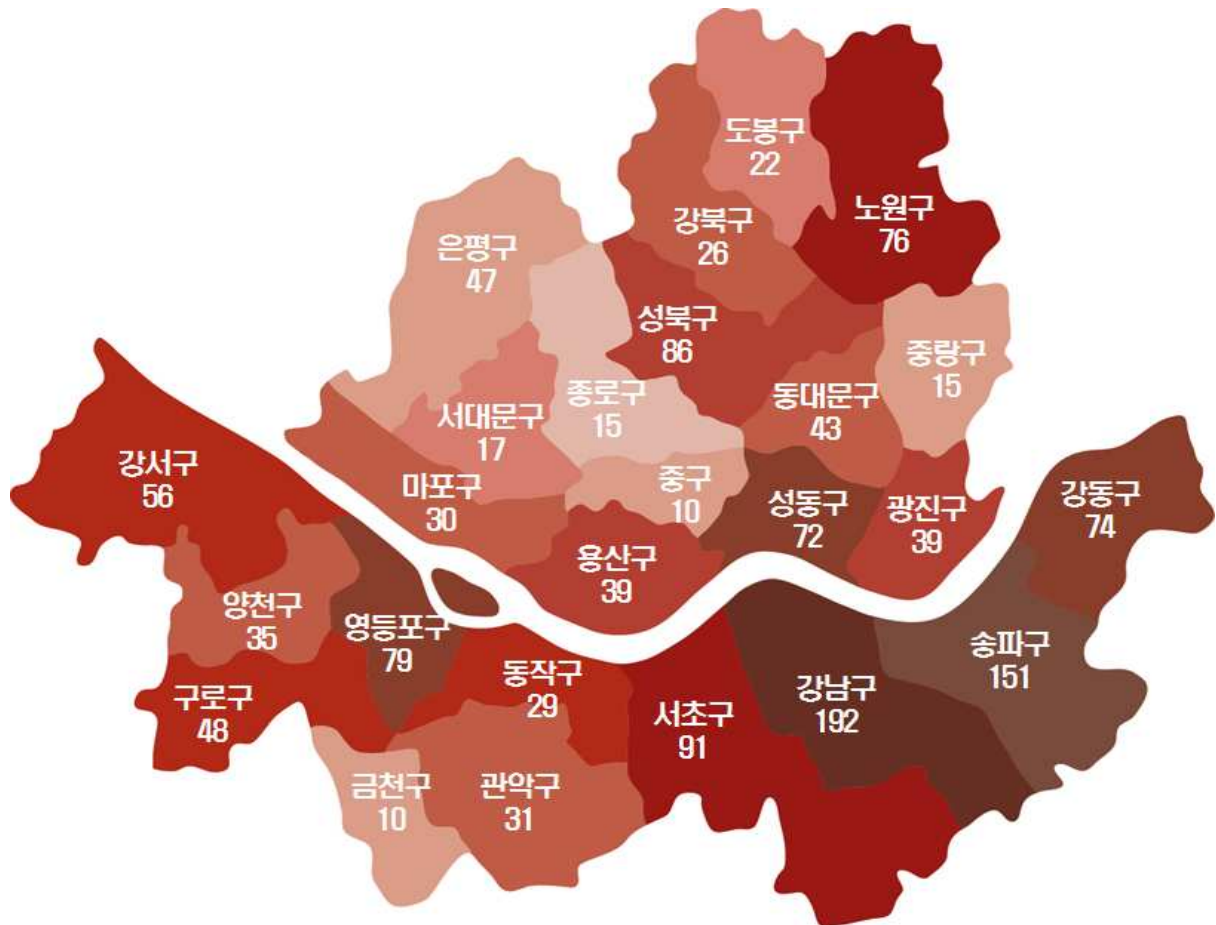
5. 부동산 분야 전담 특사경의 역할과 수사 대상은?

-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(이하 “특사경”)은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「주택법», 「공인중개사법»,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의 형사처벌 대상 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
 - 주요 수사 가능 불법행위는 불법전매, 청약통장 거래(「주택법」)
무등록 중개, 집값담합(「공인중개사법」) 토지거래허가 위반(「실거래법」)
등이 있음

6.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구성과 구체적인 역할은?

- 국토부 “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”은 국토부 가용 인력(7명)을 중심으로 국세청, 금융위·금감원, 감정원 등 유관기관 파견을 협의 중에 있으며,
 - 세부적인 조직 규모, 참여기관 등은 향후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임
- “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”은 국세청, 금융위·금감원, 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를 포함한 실거래 고강도 조사를 총괄하고,
 - 불법행위 수사의 “컨트롤 타워”로서 집값담합, 불법전매 등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전국 단위로 직접 수사하거나 각 지자체 특사경들과 함께 공조하여 합동수사 등을 수행
- *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업무는 기존부서에서 지속 수행
(토지정책과(실거래), 부동산산업과(중개사), 주택기금과(분양·청약))

1. 이상거래 1,333건 지역별 분류



2. 국세청 · 금융위 등 통보건 지역별 분류

지역	국세청	금융위	지역	국세청	금융위
강남구	109	27	서대문구	10	1
강동구	56	2	서초구	34	17
강북구	16	3	성동구	54	2
강서구	28	-	성북구	18	3
관악구	16	2	송파구	82	10
광진구	17	1	양천구	16	1
구로구	22	2	영등포구	52	10
금천구	6	-	용산구	18	4
노원구	33	1	은평구	8	1
도봉구	10	-	종로구	3	-
동대문구	15	-	중구	6	1
동작구	21	2	중랑구	6	1
마포구	14	3	계	670	94